

법제위원장님 그리고 사무국장님!

배실장님과 충분한 논의를 못한 상태에서 저에게 부탁한 영역만 대강 의견을 만들어 보냅니다. 솔직히, 의견은 만들었지만 법률에 문외한이라 엉성합니다. 보시고 수정하십시오. 무더운 여름철 모든 분들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드립니다. 김철환 드림

○ 작성영역 : 제5절 의사소통 및 정보접근권, 제7절 문화·예술, 제9절 사법·행정 절차 및 서비스와 참정권

발의안 및 1,2차 수정안 비교표

발의안	1차 수정안	2차 수정안
제5절 의사소통 및 정보접근권 제14조(차별금지) ①한국수화는 고유한 언어로서 독립된 지위를 가지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화, 점자의 육성 및 인식 개선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스스로 의사소통을 하기 어려운 중증 언어장애인, 정신지체 장애인등에 대한 별도의 의사소통지원정책을 마련할 의무가 있다. ②장애인은 누구든지 자유롭게 의사소통을 할 권리가 있으므로 국가 및 지방단체는 장애인에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에 따라 수화, 구화, 점자, 큰문자 등을 습득하고 이를 활용한 학습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제5절 의사소통 및 정보접근권 제14조(차별금지) ①한국수화는 고유한 언어로서 독립된 지위를 가지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화, 점자의 육성 및 인식 개선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스스로 의사소통을 하기 어려운 중증 언어장애인, 정신지체 장애인등에 대한 별도의 의사소통지원정책을 마련할 의무가 있다. ②장애인은 누구든지 자유롭게 의사소통을 할 권리가 있으며,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의사소통양식 등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절 의사소통 및 정보접근권 제14조(차별금지) ①한국수화는 독립된 언어로서 지위를 가지며, 장애인은 누구든지 자유롭게 의사소통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의사소통과 정보통신 접근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스스로 의사소통을 하기 어려운 중증 언어장애인, 정신지체 장애인등에 대한 별도의 의사소통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위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의사소통양식 등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수화통역, 점역, 점자교정, 낭독, 대필, 안내 등 장애인의 의사소통을 지원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그에 합당한 처우를 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누구든지 이들의 활동을 강제·방해하거나 부당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④공공기관 및 민간시설은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포함하여 자신이 제공하는 모든 정보에 대해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자막, 수화, 점자 및 점자변환, 보청기기, 큰문자, 화면낭독·해설·확대프로그램, 음성서비스, 보청기기, 전화등 통신중계서비스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누구든지 자격요건을 갖춘 수화통역, 점역, 점자교정, 낭독, 대필, 안내 등이 장애인의 의사소통을 지원하는 활동을 강제·방해하거나 부당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④공공기관 및 민간시설은 제공되는 모든 정보에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출판물을 인쇄 또는 전자적 형태로 지속적으로 간행하는 사업자와 이를 보관·대출하는 기관 및 영화, 비디오물 등 영상물을 제작·배급하는 사업자, 방송법에 의하여 방송물을 송출하는 방송사업자 등은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이를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자막, 수화, 점자 및 점자변환, 보청기기, 큰문자, 화면낭독·해설·확대프로그램

<③항 삭제>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자신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프로그램 등에 있어 장애인이 참여 및 의사소통을 위해 필요한 서비스 등을 요청할 경우 이를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공공기관 및 민간시설은 제공되는 모든 정보에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전자매체 또는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각종 데이터를 기록 보관하거나 음성·문자·영상 등을 통신 또는 전송하는 사업자는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

⑤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자신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프로그램 등에 있어 장애인이 참여 및 의사소통을 위해 필요한 수화통역사·문자통역사(속기사)·대필자·음성통역자·낭독자의 배치, 점자 및 큰 문자, 보청기기 등을 3일 이전에 요청할 경우 이를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출판물을 인쇄 또는 전자적 형태로 지속적으로 간행하는 사업자와 이를 보관·대출하는 기관 및 영화, 비디오물 등 영상물을 제작·배급하는 사업자, 방송법에 의하여 방송물을 송출하는 방송사업자 등은 <u>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이를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자막, 수화, 점자 및 점자변환, 보청기기, 큰문자, 화면낭독·해설·확대프로그램, 음성서비스, 전화등 통신중계서비스</u> 등을 제공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 국가는	<u>랩, 음성서비스, 보청기기, 통신중계서비스, 전자도서지원 등 서비스를 하여야 한다.</u> ⑤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자신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프로그램 등에 있어 장애인이 참여 및 의사소통을 위해 필요한 수화통역사·문자통역사(속기사)·대필자·음성통역자·낭독자의 배치, 점자 및 큰 문자, 보청기기 등을 3일 이전에 요청할 경우 이를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와 동등하게 이를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하여야 한다.
---	--	---

장애인이 별도의 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하고 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도서관을 설치·운영하는 등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⑦정보통신제품제조업자는 정보통신제품 및 이를 통해 제공되는 정보를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유형 및 정도, 특성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 자막, 음성, 수화, 점자, 촉각, 큰 문자, 빛 등의 인식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⑧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u>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정보통신망 및 정보통신기기의 접근·이용에 필요한 지원 및 도구 개발·보급의 의무가 있다.</u> ⑨각 서비스 제공자의 범위, 제공되어야 할 서비스의 종류 및 내용, 장애인 도서	⑥정보통신제품제조업자는 정보통신제품 및 이를 통해 제공되는 정보를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유형 및 정도, 특성을 고려한 제품의 설계 및 인식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⑦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u>장애인이 별도의 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하고 공공기관 및 민간시설 등 사업자가 정보통신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통신중계 서비스, 장애인 도서관 등을 설치·운영하는 등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정보통신기기의 접근·이용에 필요한 지원 및 도구를 개발·보급의 의무가 있다.</u> ⑧각 서비스 제공자의 범위, 제공되어야	<u><⑥항 삭제></u> <u><⑦항 삭제></u> ⑤각항의 서비스 제공자와 제공매체의
--	---	--

관, 기타 위 각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할 서비스의 종류 및 내용, <u>통신중계서비스</u>, 장애인 도서관등의 설치 운영, 기타 위 각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범위, 제공되어야 할 서비스의 종류 및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절 문화·예술 제16조(차별금지) ①장애인은 모든 문화·예술 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 이를 위해 문화·예술 시설을 장애인 아닌 사람과 질적으로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문화·예술 활동에 있어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u>특정한 행동을 강요당하지 않을</u> 권리를 가진다. <u>②문화·예술 사업자는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이해 및 인식을 증진시킬 의무, 장애인이 문화·예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의무를 가진다.</u>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문화·예술 시설을 이용하고 문화·예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u>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에 따른 문화·예술 정책을 개발하고 문화·예술 시설 등의</u>	제7절 문화·예술 제16조(차별금지) ①장애인은 <u>모든 문화·예술 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 이를 위해 문화·예술의 내용과, 관련 시설을 장애인 아닌 사람과 질적으로 동등하게 이용하고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문화·예술 활동에 있어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행동을 강요받지 않을</u> 권리를 가진다. <u><②항 삭제></u>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문화·예술 시설을 이용하고 문화·예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고, 관련 시설 등의 확충을 위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7절 문화·예술 제16조(차별금지) ①<u>장애를 이유로</u> 문화·예술의 내용과, 관련 시설을 이용하고 참여하는데 <u>제한, 배제하거나, 문화·예술 활동에 있어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행동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u> <u><③항 삭제></u>

확충을 위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8절 체육 제17조(차별금지) <u>①모든 장애인은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에 맞게 체육시설 및 프로그램에 자유롭게 접근하여 불편 없이 체육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u> ②체육 활동을 주최, 주관하는 기관·단체는 참여를 원하는 장애인을 장애를 이유로 제한, 배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적·제도적·행정적으로 장애인이 체육 활동에 참여할 때 장애에 따른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장애인이 체육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신이 운영 또는 지원하는 체육 프로그램에 장애인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여야 하며, 체육시설업자가 장애인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홍보, 지원, 감독하여야 한다.	제8절 체육 제17조(차별금지) <u><①항 삭제></u> ①체육 활동을 주최, 주관하는 기관·단체는 참여를 원하는 장애인을 장애를 이유로 제한, 배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적·제도적·행정적으로 장애인이 체육 활동에 참여할 때 장애에 따른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장애인이 체육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신이 운영 또는 지원하는 체육 프로그램에 장애인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여야 하며, 체육시설업자가 장애인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홍보, 지원, 감독하여야 한다.	제8절 체육 제17조(차별금지) ①체육 활동을 주최, 주관하는 기관·단체는 참여를 원하는 장애인을 장애를 이유로 제한, 배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적·제도적·행정적으로 장애인이 체육 활동에 참여할 때 장애에 따른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장애인이 체육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u><③항 삭제></u>
제9절 사법·행정 절차 및 서비스와 참정권 제18조(사법·행정 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제9절 사법·행정 절차 및 서비스와 참정권 제18조(사법·행정 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제9절 사법·행정 절차 및 서비스와 참정권 제18조(사법·행정 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①장애인은 생명, 신체 또는 재산권 보호를 포함한 자신의 권리를 보호·보장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법·행정 절차 및 서비스를 신속하고 적정하게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②사법·행정 절차 및 서비스 제공기관은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사법·행정 절차 및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사법·행정 절차 및 서비스 제공기관은 <u>장애인이 그 절차 및 서비스에 참여하기 위하여</u> 장애인 스스로 인식하고 작성할 수 있는 서식의 제작 및 제공 등 정당한 편의 제공을 요구할 경우 이를 거부하거나 임의로 집행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④장애인은 형사 사법 절차에 있어 보호자, 변호인, 통역인, 진술보조인 등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서의 진술로 인해 형사상 불이익을 받지	있어서의 차별금지) ①장애인은 생명, 신체 또는 재산권 보호를 포함한 자신의 권리를 보호·보장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법·행정 절차 및 서비스를 신속하고 적정하게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u><②항 삭제></u> ③사법·행정 절차 및 서비스 제공기관은 장애인 스스로 인식하고 작성할 수 있는 서식의 제작 및 제공 등 정당한 편의 제공을 요구할 경우 이를 거부하거나 임의로 집행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④장애인은 형사 사법 절차에 있어 보호자, 변호인, 통역인, 진술보조인 등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서의 진술로 인해 형사상 불이익을 받지	있어서의 차별금지) ①장애인은 생명, 신체 또는 재산권 보호를 포함한 자신의 권리를 보호·보장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법·행정 절차 및 서비스를 신속하고 적정하게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③사법·행정 절차 및 서비스 제공기관은 장애인 스스로 인식하고 작성할 수 있는 서식의 제작 및 제공 등 정당한 편의 제공을 요구할 경우 이를 거부하거나 임의로 집행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④장애인은 형사 사법 절차에 있어 보호자, 변호인, 통역인, 진술보조인 등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서의 진술로 인해 형사상 불이익을 받지
--	---	---

아니하고, 인신구금·구속 상태에 있어서 <u>장애인 아닌 사람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수준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u> 정당한 편의 및 적극적인 조치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⑤<u>위 각항에 관하여</u>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아니하고, 인신구금·구속 상태에 있어서 정당한 편의 및 적극적인 조치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⑤<u>장애인에게 제공하여야 할 편의 제공 등</u> 위 각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아니하고, 인신구금·구속 상태에 있어서 정당한 편의 및 적극적인 조치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⑤장애인에게 제공하여야 할 편의 제공 등 위 각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법과 정책의 집행에 있어서의 차별 금지) ①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직무를 수행하거나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제1항과 관련하여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는 이를 차별로 본다. - 허가, 신고, 인가 등에 있어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이유로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경우 - 공공사업 수혜자의 선정 기준을 정함에 있어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이유로 차이를 두는 경우	제19조(법과 정책의 집행에 있어서의 차별 금지) ①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직무를 수행하거나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제1항과 관련하여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는 이를 차별로 본다. - 허가, 신고, 인가 등에 있어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이유로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경우 - 공공사업 수혜자의 선정 기준을 정함에 있어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이유로 차이를 두는 경우	제19조(법과 정책의 집행에 있어서의 차별 금지) ①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직무를 수행하거나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u><②항 삭제></u>
제20조(참정권) ①장애인은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투표권, 선거권, 피선거권, 청원권 등을 포함한 참정권을 행사할 수	제20조(참정권) ①장애인은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투표권, 선거권, 피선거권, 청원권 등을 포함한 참정권을 행사할 수	제20조(참정권) ①장애인은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투표권, 선거권, 피선거권, 청원권 등을 포함한 참정권을 행사할 수